

# 韓國大學總·學長 선출 현황과 전망<sup>1)</sup>

姜勝規  
(全州又石大 教育學科)

## 1. 總·學長選出에 대한 주장을

대학에서의 민주화 논의와 실천은 사회의 민주화와 분리될 수 없다. 정치·사회의 비민주적 요소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대학의 민주적 개혁이 대학 구성원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 전의 일이다.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제5공화국을 퇴조시키고 이와 함께 사회 각 부문에서 각각 그 나름의 민주적 체제를 갖추려는 움직임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지도 역량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대학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대학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체제를 갖추는 선결 문제는 바로 대학 행정의 책임자인 총·학장을 대학의 구성원이 직접 선출하는 일이었다.

이는 과거에 정치 권력이나 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총·학장이 임명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행정 책임자가 그 위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군림하던 독재적 형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대학의 자주·민주적 발전을 위한 최우선적 장치의 하나이었다. 이런 당위론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나름대

로 총·학장을 직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형들을 개발·적용하였으며 또 이의 합리적인 실천과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교수 이외에 학생, 행정 직원들에 의해서도 추진되어 왔다.

대학의 자주·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총·학장을 대학 구성원의 뜻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자연 발생적이다. 그간 총·학장은 일방적으로 대학 외적인 힘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대학교육 주체들의 진실한 뜻이나 정서가 무시되는 대학 행정이 이루어져 왔던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외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 총·학장들은 대개 '외적인 힘'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자신들의 임무를 정당화했다. 때에 따라서는 재단의 경제적 수익을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정치 권력의 착실한 대변자나 전달자로서 그 통치 지배 논리를 선진적으로 정당화하는 앞잡이 노릇에 혼신했던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심지어 큰 힘을 가진 이들이 대학 구성원을 '외적인 힘에게 팔아 넘기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경우들을 여러 대학 구성원들이 겪어 왔다. 이는 정치 집단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신적 지도력을 지닌 대학 총·학장의 권위를 선점해 버리는 꼴을 만

1) 이 글은 본인의 글인 '총·학장 직선과 대학 자주·민주화의 역량'(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학자주화 백서」, pp.53~74)을 청탁 의도에 맞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또 많은 부분의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보완한 글임.

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대학 내부의 구성 주체들이 지닌 교육적 요구나 의견을 적당히 무시하여도 임명된 총·학장이 그 자리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대학 밖에서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교육적인 구조적 모순은 대학 교수와 학생, 직원을 일깨워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이었다. 많은 대학인이 갈구해 온 것은 바로 교육적인 양식과 대학인으로서의 상식에 따른 행정과 지도력이었고, 이를 위하여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가 직접 총·학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었다. 즉, 교수가 직접 대학 행정의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외부의 힘에 의한 일방적 통제와 정치 권력 및 재단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대학의 기능과 이념을 굳게 그리고 참되게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 모아졌는데, 이를 위한 장치 중의 하나가 총·학장 직선제인 것이다.

그런데 대학의 자주·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총·학장 선출에 교수만이 아니라 학생, 행정 직원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대두되어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총장입후보자추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그 자격을 결정하기도 하며, 교수회에서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학생과 직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는 교육의 민주화 추세 속에서 정당화 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대학 구성체 간에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게 한다. 대학의 자주·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행정 책임자인 총·학장을 뽑는 일이 교수만의 일이 아니고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일이라는 인식은 사회 민주화와 함께 대학의 자주·민주화를 추진하는 대학 구성원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 자주·민주화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대학 각 구성체의 자각된 민주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대학의 행정 책임자인 총·학장을 선출하는 일은 대학의 연구·교육·사회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공동 참여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즉, 과거와 같이 교육 주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교육부나 재단의 일방적 ‘낙하산식’ 임명에 대해서는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대학의 기능 수행을 주도하는 교수들만이 총·학장을 선출하는 것도 다른 대학 구성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간 대학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낸 주된 세력이 자신들이라는 생각을 양보 할 수 없으며 또한 교육 주체 중의 하나라는 자각을 하면서 총·학장 선거만이 아니라 학사 행정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한편, 행정직에서는 대학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봉사·현신해 온 대가로서 당당하게 대학의 한 구성체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어, 이런 입장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총·학장 선출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총·학장 선출에 학생과 행정 직원이 교수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최고 책임자인 총·학장 선출에 대학의 한 구성체인 학생, 직원의 의견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바로 대학 의사 결정 체제의 민주화를 촉진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대학의 각 구성체가 새롭게 자각해야 할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안목을 바탕으로 각 구성체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민주적·합리적·자율적 대학 질서를 찾기 위해 각 구성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현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 2. 總·學長 直選의 類型과 實態<sup>2)</sup>

총·학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대학 운영에 대한 변화된 새로운 인식과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다음의 몇 가지로 이를 분류

2)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학의 총·학장 선출 방식과 실태를 날날이 파악하지 못하고 입수 가능한 자료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학별로 소개하는 내용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 아울러 충분한 자료를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할 수 있다. 즉, 교황식 선출 방식과 입후보 선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합한 선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세 가지 선출 방식은 또한 학생과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참가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띤다.

여기서는 필자가 가진 자료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형별로 개괄적인 특색을 소개하고 이에 소속되는 대학들을 분류하였다. 또한 유형별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각각 1~2개 대학의 총·학장 선출 규정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알아 보고 총·학장 직선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 1) 입후보 후 선출 방식

일정한 수에 해당하는 교수들의 추천을 얻어 총·학장에 입후보하면 입후보자들 가운데 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평교수회, 평교수협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선출하여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이를 추천하여 임명받는 절차를 거치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에 이를 추천하여 재단은 이에 대한 임명을 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총·학장 선거는 대개 교수협의회에서 정한 총·학장 선출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일체를 관장하기도 하며, 교수회나 교수협의회(평교수회) 임원진이 이를 직접 관리하기도 한다. 이 방식으로 총·학장을 뽑는 대학은 전북대, 충북대, 전남대, 강원대, 경남대, 계명대, 한양대, 원광대, 경북대 등이다.

#### ① 忠北大學校

충북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89년 7월 26일 이후 시행)에 따라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전에 교수평의회에서 선출한 9명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선출에 관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총장 선출 방식은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적절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재직 교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당선이 확정된다. 총장의 자격 기준은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투철하고 대학 구성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정규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공영체를 채

택하고 있는데, 즉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1회 이상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가지며 입후보자에 관한 여러 사항을 선거 공보로 작성하여 선거권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총장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2인의 참관인 명부와 함께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거 운동으로서 허위 사실 유포, 집단적 서명이나 시위, 모의 투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벽보나 현수막 등의 부작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제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89년 12월 12일 5인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세 차례의 투표(전체 교수의 96%인 401명이 참여)를 거쳐 현재의 총장을 선출(222표 획득)하였다. 당선된 총장의 선거 공약으로는 학장회의 등 각종 기구의 민주적 운영, 교수평의회의 의결 기구화, 학과 중심 운영 체제 확립, 발전 계획 수립, 연구비 증액, 국제 교류 강화, 시설 확충 등이었다. 취임 이후 교수협의회에 예산 심의를 의뢰하는 등 민주적인 운영 체제 확립에 힘쓰고 있으나, 다른 대학이 조심스럽게 지켜 보았던 교수평의회의 의결 기구화를 학칙에 반영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는 일에는 부진하다.

한편, 이러한 선거에 대하여 학생과 행정 직원이 총장 직선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집단 행동으로까지 진행되었으나 자체 역량의 부족으로 스스로 양보한 바 있다.

#### ② 慶南大學校

'89년 11월 30일자로 총장 선출 규정이 교수회에서 통과되어 11월 30일자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8일 오후 2시 총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경남대의 선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총장은 교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적절 선거로 선출된다. 재직하고 있는 전임 이상의 교수가 선거권을 가지며, 휴직증에 있거나 6개월 이상 장기 출장증인 교수는 제외된다. 총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부교수 또는 교수, 전·현직 총장, 타

대학에 재직한 사람으로 10년 이상의 교수 경력을 가진 부교수 이상인 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장 선거를 관장하는데, 총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된 때는 퇴임된 지 7일 이내에 선관위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수회 산하에 두고 11인 이내의 위원을 두되, 그 중 6인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선출하고 2인은 평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다. 후보자는 위원회가 공고한 등록 기간 내에 선거권자 30인 이상(타 대학 재직자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일정한 서류(등록신청서, 이력서, 재직경력증명서, 추천인 서명날인 추천서)를 갖추어 등록을 하며,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등록 심사를 거쳐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공고와 함께 후보자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대학발전협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대학발전협의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교수회에 제시할 수 있다.

이 대학은 일체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게 되어 있다. 단, 선거 전에 선관위가 정하는 공식 간행물에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거는 선관위가 교수회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선관위 위원장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후보자는 교수회에서 1회에 한하여 3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2/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당선되는 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결정하고 여기에서도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3차 결선 투표를 통해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당선이 결정된 자일지라도 후보 등록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나 부정한 방법의 선거 운동을 했거나 투·개표에 부정이 있을 경우,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이의 신청에 의해 사실을 조사한 뒤 당선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당선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체 없이 재단 이사회에 이를 알리고 총장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총장 선거 과정은 학생, 직원 및 기타 대학 구성원의 대표가 참관할 수 있다.

이상이 경남대학교의 총장 선출 방식인데, 이 규정을 만들 당시 직원협의회에서는 선거권을 요청하였고 총학생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요청하였으나 별 무리없이 위의 규정을 통과하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고 한다.

### ③ 全北大學校

전북대는 직선 총장 선출을 위해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89년과 '90년초까지 새로운 민주적 총장을 선출하고자 교수와 학생에 의해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많은 장애들로 직선 총장 선출에 큰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90년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당시 총장의 후임으로서 5월 3일에 선거 공고를 하여 '90년 5월 30일 현재의 총장을 선출하였다.

총장 선출 규정은 '88년 10월 20일에 제정하여 두 차례 ('88년 10월 27일, '88년 11월 22일)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장 선거는 직접 비밀 투표를 하는데,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교수평의회가 주관하여 비상설 기구로서 '전북대학교 총장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이 모두 포함된 10~20인 규모로서 총장 선거에 관한 모든 일을 관리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권은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게 주어지며 선거인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휴직 중인 자나 6개월 이상 장기 출장증인 자는 제외된다. 총장 입후보자의 자격 기준은 정규 대학의 교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 구성원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대학 관리의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총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 양식의 서류(총장입후보 신청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추천참관인 명단, 기타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선관위가 정한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하며 선관위는 최소한 1회 이상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원장은 투·개표 상황을 방청하려는 자에 대하여 선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당선의 확정은 과

반수 득표자로 하여 이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득표 순으로 5위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후보자의 사퇴 등으로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재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1/3 이상의 득표를 하여도 당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선관위원장은 개표 종료와 함께 당선자를 확정하여 이를 공고하며, 교수평의회에서는 당선자를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추천한다.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선 공고일 7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를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관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당선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총장의 임기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증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 참여 문제가 학생들에 의해 강력히 거론되어 학생 대표 2인이 선거관리위원회(단과대학 대표 12인, 교수협의회 부회장 1인, 총장이 추천한 자 3인, 학생 대표 2인 등 모두 18인으로 구성)에 참석하여 별 문제 없이 치루게 되었으나,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는 입후보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선거에 사실상 깊게 관여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비판을 받은 몇몇 교수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출마를 아예 포기하기도 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북대는 총장 선출 과정에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 2) 교황식 선출 방식

교수협의회(교수평의회, 평교수회, 평교수협의회)에서 두기명 비밀 투표로 2인을 선거하여 그중 과반수를 얻은 두 사람(전국대, 전주우석대, 경기대, 동아대의 경우)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여 총·학장 후보를 선출하거나 몇

차의 투표(대개 2~3차)를 거쳐 과반수 득표자나 최고 득표자(연세대, 부산대의 경우)를 총·학장 후보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재단이 이 후보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국립대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성균관대, 연세대, 충남대, 전주우석대, 목포대, 경기대, 전국대, 부산대 등이 이런 방식으로 총·학장을 선출하고 있다.

### ① 木浦大學校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이전의 학장 선출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총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1989년 11월 30일에 통과된 목포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에 의하여 당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89년 12월 13일에 제5차의 선거를 거쳐(오전 9시 30분~15시 40분) 현재의 총장을 선출하였다. 총장 선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평의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관위는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관한 모든 일을 관리한다. 교수평의회는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휴직자나 해외 체류자를 제외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다.

총장에 피선될 수 있는 자는 목포대에 재직한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이며 다른 대학의 사람이 총장의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1/5 이상의 추천을 얻어 추천서를 투표일 3일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일은 공고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로 정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은 투표일 1주일 전까지 하여 공람하도록 한다. 총장으로 추천된 자는 2차 투표를 시행할 경우 그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소견 발표를 한다.

총장 당선은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여 이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하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투표자의 10% 이상을 득표한 사람 5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하고 3차 투표에서는 3위까지 선정하여 투표하며 3차 투표에서는 득표순 2위에 든 자를 선정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선관위원장은 7인 이내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선관위원장은 개표 종료 직후 당선자를 공고한다.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페선거권자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제소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 소청이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교수평의회에서는 당선자를 현 총장에게 총장 후보 임명 청탁을 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득표대학 총장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이를 득표대학 총장으로 추천한다.

이런 절차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총장 임명 예정자를 단수 추천하였으나, 세 차례의 추천과 반복 끝에 차점자와 함께 복수 추천(1990. 2. 14)을 하여 현재의 총장이 임용되었다. 총장 임용의 사실은 관보 제 11467 호(1990. 3. 6)에 수록되었다.

## ② 全州又石大學

전주우석대의 경우에는 학장 선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평교수회 회칙과 시행 세칙에 학장 선출과 그 방식에 관한 조항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교수회 총회에서 학장 후보를 추천하며 교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선출할 수 있다. 학장 후보 추천 선거를 할 때에는 학생 대표 5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학장 추천을 위한 회의는 재적 교수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예비 선거에서 출석 교수가 2명을 연기하여 출석 교수의 과반수를 얻은 5인을 대상으로 본 선거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 2인을 재단에 추천한다. 본 선거에 들어 가기 전에 각각 5분 이내의 소견 발표와 신상 발언을 한다.

교외 인사를 학장 후보자로 선출할 때에는 평의회에서 7인 이내의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중앙지 일간 신문에 초빙 공고를 하여 응모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에 이를 부의하여 두기명 비밀투표로 재적 교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학장 페선 자격은 4

년제 대학에서 1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학장의 임기는 학교 정관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석대는 두 차례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전임 학장과 현재의 학장을 선출하였다. 전임 학장의 경우 6개월 직무 대리와 1년의 임기로 사임하여 현재의 학장을 선출하였다. 한 차례의 유회를 포함하여 세 차례의 투표를 거쳤다. 중간에 과반수 득표자 4명이 사임함에 따라 2명의 후보자를 내기까지 모두 11차례의 투표 과정('90년 1월 16일 제1차 예비 선거 소요 시간 6시간 30분, 1월 19일 10시 회의 유회, 제3차 선거 1월 19일 오후 1시 본 선거 실시 학장 후보 1명 선출, 제4차 선거 제2차 본 선거에서 나머지 2명 선출)을 거쳤다. 평교수회에서는 회장의 이름으로 과반수 득표자 2명을 재단에 추천('90. 1. 24)하여 재단에서는 1명을 교육부 승인을 얻어 현재의 학장으로 임명하였다('90. 1. 30).

학생들은 이 선거에 학생과 직원이 참가하여야 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며 회의 진행에 수 차례의 혼란을 겪었다. 특히 새로 뽑힌 학장에 대한 관변어용성 시비는 매우 심각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런 현상은 대학의 민주화·자주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기까지 하였다. 총학생회에서는 교수, 학생, 직원이 동시에 추천을 하여 이 추천자들 중 중복된 자를 대상으로 다시 평교수회에서 평교수회 회칙에 따라 학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학장 선거 진행 과정에 이를 평교수회의 의결을 거쳐('90. 1. 19) 다음 기회부터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앞으로의 학장 선출에 이 의견 반영에 대한 논란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평교수회에서 새로 뽑힌 현재의 학장은 평교수회 조직의 기능에 대하여 평교수회 회칙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평교수회 임원 교수와 수 차례의 논쟁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 3) 학생과 행정직 참여 선출 방식

'87년 6월 항쟁 이후 거세게 일어난 학원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 논의되기 시작한 총·학장

직선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한 셈이며, 이를 더 발전시켜 대학 구성원의 대표가 모두 총·학장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단국대의 경우 교수들이 선출한 총장 후보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를 얻도록 합의함으로써 학원 민주화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세종대에서는 학생과 직원노조의 대표로 구성된 '총장선출여론수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을 선출한 경험(1987년 12월)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대의 경우에는 교수, 학생, 직원, 학부모,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미 민주적 총장을 선출했다('87년). 고려대에서도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총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동의를 얻어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을 선출했다(1990. 6. 14). 단국대의 경우에는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을 선출한 후에 이를 교수, 학교총 대표 3명과 학생 대표 2명이 합의함으로써(1990. 6. 13) 교수협의회에서 선출된 총장을 학생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sup>3)</sup> 이는 실질적으로 대학 총장 선거 사상 최초로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한 총장을 학생들이 동의한 것이다. 그외에 많은 대학에서도 총·학장 선출에 학생과 직원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반영하고 있다.

교수 이외에 학생과 교직원이 총·학장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은 여러 유형인데 다음 대표적인 몇 대학의 경우를 소개한다. ① 世宗大의 경우는 전체 교수회에서 총장을 선출하기 전에 교수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학생, 노조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총장 선출 여론 수렴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재단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그러나 이 대학에서는 이것의 불법성을 재단에서 재기하여 이 제도에 의해서 선출된 총장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큰 희생이 있었으며 많은 학생과 교수가 이에 맞서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많은 교수와 학생이 희생되었다. ② 高麗大의 경우에는 총장 입후보자들에 대하여 직원 2명, 학생 3명, 교수 15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고려대학교 총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동의를 얻는 추천 선거 과정을 거치

는데 여기에서 한 표라도 일지 못한 후보는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교수협의회에서 이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직접 비밀투표를 하여 과반수를 얻은 2명의 총장 후보를 재단에 통보하고 재단 이사회는 이중에서 한 명을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총장으로 임명한다. 지난 해에 이 제도에 의해 현재의 총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제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일을 거부했었다. ③ 朝鮮大의 경우에는 교수, 학생, 직원, 동문회, 학부모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수협의회에서 직선한다.<sup>4)</sup> 이미 이 제도에 의해 현재의 총장을 선출하였는데, 이 선출 방식이 다른 여러 대학의 총·학장 선출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 자주적으로 대학의 민주적인 틀과 장치들을 갖추는 데에 신도적인 조치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의 총장 임기가 '91년 8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④ 檳國大의 경우에는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여 학생의 동의를 얻고 재단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이와 같은 선출 방식에 의해 현재의 총장이 선출되었다. ⑤ 中央大의 경우에는 교수협의회와 직원이 각각 3인을 추천하여 이를 중에서 재단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임명했다. ⑥ 國民大의 경우에는 교수협의회에서 선출된 자에 대하여 학생 대표, 노조 대표(각 5인)가 동의권을 행사한 후 재투표하여 과반수를 얻은 자를 선출하여 재단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임명했다. ⑦ 韓南大의 경우에는 교수, 학생, 동창회에서 각각 추천하고 재단이 이 추천자들 중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⑧ 西江대의 경우에는 예수회 신부 중 후보 등록을 받아 교수회에서 직선한다.

#### 4) 유형별 문제점

교황식 선출 방식이 대학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는 뜻하면서 비교적 조용하게 선기가 처리진다는 안정된 심리적 분위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

3)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 "총장직선제 열기 확산", 「사교연회보」, 제 2호, 1990. 6, p. 1.

제점이 있다.

교황 선출은 카톨릭의 위엄과 권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인지도 모른다. 바로 이 점이 대학의 자주·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제도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황식 선거 방식을 처음으로 연세대에서 채택하여 총장은 선출했을 때, 각 언론 매체에서는 이 방식이 최선인 것같이 다루었지만 이는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는 연세대의 특수 사정 때문이었다. 누구든지 후보가 되고 투표자가 된다는 그럴듯한 논리는 오히려 비민주성을 은폐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카톨릭 권위 체계에서 초기경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는 한정이 있는 것이다.…… 대학 사회에서 보직을 장기적으로 맡은 인물이 교수들에게 잘 알려지기 마련이고 총장으로서의 인물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교수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기 마련이다.”<sup>4)</sup>

이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드러난 큰 문제점은 교수들이 입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총·학장 격 격자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아무나 당선이 되어도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식의 무책임한 생각이 선거 과정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입후보자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민주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신이 있으며, 대학 발전과 사회 발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므로 단순하게 지명도만 높은 사람들이 뽑히기 쉽다. 현재 우리의 대학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적격한가를 판단하려면 총·학장 자격자들이 공개적인 토론과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를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 구성원들이 적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은 이러한 여론 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추천하여 다수표를 획득한 교수나 과반수를 획득한 교수가 총·학장으로 추대된다는 데 있다. 즉, 소위 ‘자리’에 대한 욕

심단으로 총·학장을 탐내는 사람으로서 인기 전략에 능한 사람이나 또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나 정권의 하수인 또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단과대학이나 학부의 교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방식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방식에서는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를 막을 장치들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일부 속물적 출세주의자 또는 일부 특정 이익을 응호해 주는 대변자에게 일방적으로 총·학장의 자리를 그대로 넘겨 주게 될 경우들도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이 음성적 압력으로親재단 교수들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재단의 대변자를 당선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 그들의 손아귀에 대학을 통째로 넘기는 사례들도 나타난다. 이는 오히려 대학 자주·민주화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달리 입후보 후 선출 방식은 교황식 선출 방식이 갖고 있는 결함을 보완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선거 운동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비본질적인 파벌 조성이 크게 우려되며, 세속적인 선거 운동은 대학에 속물적인 풍토 조성을 자극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못한다. 학연과 지연 등을 이용하여 본래의 대학 기능과 민주화·자주화 실현 의도와는 정반대인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으며, 금품 수수나 보직을 약속하고 선거 운동을 벌이는 추악한 현상은 대학이 지녀야 할 모범적인 도덕성과 선도적인 규범성까지를 크게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타락 현상은 대학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총·학장 선출에 대한 대학인의 역량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 나타난 여러 이권 개입들은 학내 구성원들의 파벌을 형성하게 되어 상당 기간 동안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장애 요소로 남아 과도기적 혼란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 현상은 대학을 명실상부한 자주·민주적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임태하고 있다. 교황식 선출 방식과 입후보자 선출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대학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

4)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식」, 제 3 호, 1989. 11. 26, p. 3.

여 총·학장 직선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에 전혀 없는 완전무결한 대안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 또한 대학의 자주·민주화 실현을 위하여 대학 구성원에게 남아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과제이다.

### 5) 수정·보완을 위한 대안과 주장을

교황식으로 하되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일정 수의 상위 득표자들을 입후보자로 선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선거 운동과 소견 발표 기간을 설정하고 학교 발전과 사회 발전에 보다 더 협신할 수 있는 교수가 추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수협의회나 평교수회에서 다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을 한다. 일정 기간의 선거 운동과 소견 발표 기회를 마련하여 입후보자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밝히고 투표권자들이 이를 잘 아는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소위 ‘무책임하게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을 한다는 식’의 투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木浦大가 교황식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여 제1차 선거에서 상위 득표자 5인을 입후보자로 결정하고 정견 발표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慶北大의 경우, 1990년 4월 12일 총장 선출 규정을 개정하여 추천 투표를 거쳐 다시 최다 득표자 3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입후보 후 선출과 교황식 선출 방식을 결충한 선출 방식을 택하여 총장을 선출하였다. 이와는 달리 많은 대학에서 총·학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학생과 직원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대안과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주장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교수가 직접 총·학장을 선출한 후에 학생, 직원이 선출된 후보자에 대하여 겨부권 등을 행사한 후 다시 교수협의회에서 재선거를 한다.

- 교수, 학생, 직원이 각각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들 중에서 재단이 임명한다.

- 교수, 학생, 직원이 각각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중 중복된 자를 다시 평교수회(교수협의회)에서 결선 투표를 한다.

- 학생과 직원 대표가 선거 과정에 직접 선거

권을 행사한다.

- 교수협의회(평교수회)에서 입후보자를 직선하는 선거 과정에 학생과 직원이 의견을 피력하여 투표 과정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학의 자주·민주적 발전의 추진은 대학 구성원이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에 의거하여 총·학장 선출도 대학 각 구성체의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론은 여전히 우세하다. 그러나 총·학장 선출은 교수만의 권한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대두되고 있으며, 또 다른 현상은 사립대학의 경우에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후 일부 재단에서는 이 법에 따라 총·학장 선출은 재단만의 권한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절진적인 총·학장 직선 제도의 정착은 대학 발전을 위한 필연적·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을 간파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립된 갈등은 대학의 자주·민주화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 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과 논쟁 등의 혼란이 지속될 소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 3. 直選 總·學長의 時代的 課業

대학 내부의 자주·민주화는 총·학장의 역량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선출된 총·학장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뽑힌 직선 총·학장에 의해 대학의 자주·민주적인 가틀이 다져지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세로 뽑힌 총·학장에 의해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가 오히려 퇴보되는 대학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 내부의 큰 반성과 함께 또 다른 변혁과 혼란을 예고한다. 이것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윤리적 자각이 실행되어야 하지만, 직선 총·학장의 비민주적인 태도와 시대적인 큰 뜻을 어기고 있는 일부 직선 총·학장들의 반지성적인 배신적 행위와 작태는 치결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사회적 지도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폐배의식과 출세지향적인 의식이 대학을 병들게 하는 산물이다. 대학의 주요 가능한 하나가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끌어 가는 역할임을 상기할 때, 대학 구성원의 사고 체계

와 이론적인 주장은 역사적 선도성을 지녀 명실상부한 사회적 지도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크나큰 난제인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대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선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화 실현의 염원으로 세로이 선출 추대된 총·학장의 역할과 임무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대학 구성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총·학장은 과거에 당했던 수모, 즉 정권의 하수인 노릇으로부터, 그리고 재단의 사익 활동의 앞잡이 노릇으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기능과 이념을 자주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대학의 연구의 자유·발표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역량의 구축, 대학의 민주적 의사 결정 체제의 경착, 대학 밖의 강요에 의해 진행되어 온 반교육적인 각종 비리의 척결, 사회 민주화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 4. 總·學長 直選制度의 定着을 위한 提言

대학의 본래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학장을 대학 구성원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경착시키는 일은 필수 불가결하다. 앞에서 소개·논의한 여러 가지의 총·학장 선출 방식 이외에 또 다른 대안들을 논의하면서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총·학장 직선 제도를 모색하고 이를 경착시키는 일은 바로 대학 구성원들의 임무이다. 대학 구성원 모두는 진정으로 각 자신의 참된 개인적 삶을 위해 총·학장 직선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뜻뜻하게 ‘나’를 발표할 수 있고 자신의 입장과 이론을 특정인들의 이익과 힘 때문에 굽히고 숨기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대학 발전의 첫 조건이 될 것이다. 각자의 입장과 주장과 신념과 이론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대학에서만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참으로 사회 발전과 사회 구성원의 발전 또는 복지를 위한 주체적·자주적인 학문의 자유로운 장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이러한 의견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묵살되고 침해·탄압을 받음으로써 대학이 학문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능력을 박탈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총·학장 직선은 정부나 재단의 일방적인 전횡으로 오랫동안 정권 유지와 소수 특권자들의 이익을 보호·유지시켜 왔던 대학의 긴 희생으로부터 탈피하여 대학 구성원들에 의해 자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우선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부정적인 문제들을 감안한다면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행착오적인 부작용들을 이해롭게 극복해 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진통일 따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소위 ‘공안정국’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타나고 과거의 통제 방식으로 환원해 가려는 각종 윤성적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결국 이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체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자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전기를 임태시키고 있다. 비교육적인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날치기식’ 통과 이후 재단의 기세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과거처럼 독점적인 권력 형태로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음은 새로운 차원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총·학장 직선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문제점들이 이러한 추세의 힘과 결합될 경우, 자주적 역량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영세한 사립대학이나, 특히 부도덕한 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총·학장 직선제 그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회 각종에 고조되어 있는 민주적 역량 기반과 이미 많은 대학에서 뿐 내리고 있는 총·학장 직선제의 확산 추세 등의 역사적인 대세가 이러한 역행 추세를 그대로 방지하지 않기에 충분할 것이다. ■

#### <参考文献>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학자주화백서」,  
도서출판 터, 1990.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식」, 제 3 호,  
1989. 11. 26.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교연회보」, 제 2  
호, 1990. 6.

「목포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보고서」, 1990.

「충북대학교 교수협의회보」, 1989. 8. 21, 1990. 8. 21.

「고려대학교 총장선출 규정」.

「전주우식대학 교수수회 회칙」.

「경남대학교 총장선출 규정」.

「경북대학교 총장선출 규정」.

「전북대학교 총장선출 규정」.

「원광대학교 총장선출 규정」.

「충북대학교 총장선출 규정」.